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순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규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비리근절을 위하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하여 최근 3년간 서울시가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반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하도급과 관련하여 감사지적하고 시정조치한 건은 2016년 133건, 2017년 767건, 2018년 274건, 2019년 936건, 2020년 114건입니다.

이는 건설업계에 불법하도급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는 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신고양식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신고의 접수·처리 조문내용과 별첨 신고서 피신고자의 정보 형식이 맞지 않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조문내용을 준용하여 교정하고자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